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6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임원 (1명)	·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감봉 3월 상당) · 과태료 25백만원 부과

2. 조치내용

○ 과태료 25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,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, 매매명세를 분기별(월별)*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

* (월별 신고의무) 투자권유자문인력, 조사분석인력, 투자운용인력
(분기별 신고의무) 그 밖의 임직원(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 제1항 제3호)

◦ 리딩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소속 甲은 2021.3.10. ~ 2025.3.26. 기간 중 자기의 계산*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기의 명의가 아닌 본인이 설립한 법인㈜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

거래하면서,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 甲은 본인이 100% 출자한 법인㈜ 명의의 증권계좌를 최초 개설하면서 본인 명의의 은행·증권계좌에서 동 계좌로 매매자금 송금 및 국내 상장주식을 출고하였으며, 주식거래주문을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됨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 제1항
-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4조 제2항, 제4항